

300-1-083. 신문조서(呂運亨 I 大正8년 및 치안유지법 위반)

■ 呂運亨의 신문조서(I) 수록

- 呂運亨은 私立 興化學校·官立 郵遞學校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楊平 東光學校·江陵 草堂義塾에서 教鞭을 잡았다. 그 후 京城 勝洞禮拜堂 전도사가 되었고, 平壤 長老 敎神學校 2년 과정을 마쳤다. 그 후 南京 金陵大學 3年 修業 後 上海에서 美國人이 경영하는 協和書局에 취직하였고, 1918년 11월 美大統領 윌슨의 대표 크레인이 上海에 도착 시 환영회에 참석하였다.
- 파리 平和회의 참가를 지원받기로 하고 英文청원서를 작성하여 조선민족의 해방과 독립에 대한 청원을 平和會議에 호소하기로 하고, 申錫雨·張德秀·趙東祐와 협의하여 북경에서 金奎植을 조선대표로 파견기로 하고 金奎植·張德秀와 같이 呂運亨도 출발하였다.
- 그 후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上海 佛租界 露飛路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國內 독립운동 상황을 各國 신문 통신에 게재하여 파리의 金奎植, 美國의 李承晚 등에 보고 하였다. 그 후 임시정부조직을 주장하여 委員制로 운영하였다. 外交部委員長職을 맡았었고, 組織改編으로 僑民團長에 취임하여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원조하였다.
- 呂運亨은 모스크바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 新韓青年黨 대표로, 임시정부 대표 金奎植, 高麗公산당청년회 대표 林元根, 애국부인회 대표 金元愛 등 2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참가국 日本, 中國, 朝鮮, 蒙古, 자바, 러시아 등 6국이 의장을 1명씩 선출할 때 의장이 되어 노동, 농민, 청년, 민족, 여성 등의 문제를 취급하였으며, 조선은 농업국이므로 일반 민중을 민족운동 독립운동가로 지지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1919년 4월 임시정부 감독기관으로 대한임시의정원을 조직하여 의원 및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18년 조선의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新韓青年黨을 조직하였으며, 중국과의 紐帶를 위해 中韓互助社를 조직하여 副議長이 되고 宣言書를 인쇄, 中國, 만주, 조선 내 각지에 선전하였다. 1920년 봄 上海에 공산주의 클럽을 조직하였다. 李東輝 등이 클럽에 加入, 공산당원이 되어서 고려공산당이라 개칭하고, 임시정부 또는 관계자 趙琬九·申宋浩·金料奉 등에게 권고하여 공산당에 참가시켰다. 그 후 고려공산당을 조직하였으며 또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 책임자에 朴憲永이 되었다. 그 후 선전물인 『공산주의 독본』 『공산당 선언』 1천 부, 『직접 행동』 1천 부 등 선전인쇄물의 조선문 번역을 담당했으며, 이를 각지에 송부하였다. 그 후 趙東祐를 조선 내에 파견, 조선공산당 조직을 완료시키고, 후에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시켰다.
- 1921년 安昌浩와 協議, 各地 獨立團의 임시정부 反對를 계기로 獨立運動의 統一을 위해 國民代表大會를 1923년에 上海 佛租界 美國人禮拜堂에서 3개월간 개최하였다. 약 10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의장 金東三, 서기 金綴洙의 司會下에 임시정부 내용 갱신 문제를 토의했다. 安昌浩 등과 임시정부 창조 문제를 두고 대립하였다. 국제공산당인 창조과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별도로 임시정부를 조직할 계획이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 呂運亨은 1922년 上海에서 金九·李裕弼·趙東祐·吳永善 등과 같이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勞兵 1만 명을 모집하여 한국노병회를 조직하였는데, 이사장에 金九, 교육부장에 呂運亨 등이 선정되었다. 安昌浩와 모의하고 임시정부측 李東寧·李始榮·金九, 反對側 朴健秉·張健相·元世勳 등을 佛租界에 集合시켜 韓國獨立時事促進會를 1주일간 개최하여 융화를 시도하였으나, 임시정부측의 강요로 성과 없이 해산했다. 伊市派 高麗共產黨 上海支部의 해산으로 東方大 영어교사로 근무했다. 孫文 추도식에 참가하였고, 中國공산당과 政府 간의 문제에도 관여했다. 그 후 曹奉岩과 함께 조선공산당 대표로 모



스크바에 갔으며, 1회 모스크바 공산대학 파견학생 權五稷 등의 旅券 교섭 등을 해 주었다.

- 1926년 廣東에서 國民黨 2回大會 개최시 國民政府 主席 汪精衛의 초대로 출석하여 中國革命에 있어서 國民黨의 使命에 對한 연설을 하였다. 1928년 復旦大學 명예교수로 있었으며, 李始榮과 밀의하여 勞農政府에서 무기를 얻어 독립단체의 원조를 도모했다. 北京 反帝國主義동맹대회에 출석하였으며, 계속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 이 사건은 1919년 制令7號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건 1조 및 3조, 치안유지법 1조, 2조, 3조, 7조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다(1929년 7월 29일)